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3
----------	-----

2025. 4. 30.(수)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유상용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충청북도청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협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제1항)

나. 교육행정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개정(안 제3조제2항)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 ‘기획조정실장’ 으로 변경

다. 제6조 제목을 ‘공동의장의 직무’ 로 개정(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가. 조례 개정이유 검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도청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의 행정·재정 정책을 총괄하며 대외협력 및 중앙부처 대응과 정책 조정 및 갈등 관리, 주요 회의 총괄 등 자치단체장의 핵심 보좌 기능을 하는 충청북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임
- 교육과 관련된 협력 사업들은 단순 교육정책이 아니라 복지, 청소년, 인프라(학교 환경 개선, 체육 시설 등) 문화, 일자리까지 포괄함. 실국별로 쪼개진 사업들을 큰 그림에서 조정하고 연결하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 교육협력 사업 대부분은 교육청과 도청이 예산을 매칭하거나 분담하는 구조임. 기획조정실장은 충북도의 예산 총괄책임자로서 재정적 판단과 협의를 직접할 수 있으며 교육청과 협력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충북도의 기획조정실장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교육청과 도청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구성)에서는 협의회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 의장이 된다는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문장 정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적절히 반영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충청북도 당연직 위원에 ‘균형건설국장’ 대신 ‘기획조정실장’을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청 사업이 도청과 예산을 매칭 하거나 분담하는 사업이 많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원활하고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제목을 공동의장의 직무로 개정함으로써 조문의 내용이 ‘교육감과 도지사’ 공동의장의 직무임을 밝혀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됨
- 조례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교육청과 도청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균형건설국장 당연직 위원이 제외됨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협의 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면서 도와 교육청 직급 불부합에 따른 기관 간 소통의 불균형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되며, 협의회**”로,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의장의 직무)**”를 “**(공동의장의 직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u>협의회</u>는 공동의 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u>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u></p> <p>② <u>협의회</u>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u>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u>으로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u>의장의 직무</u>) ①·② (생략)</p>	<p>제3조(구성) ① <u>협의회</u> 공동의장은 <u>교육감과 도지사가 되며, 협의회</u>----- ----- ----- 한다.</p> <p>② ----- ----- -----.</p> <p>1. ----- ----- ----- <u>기획조정실장, 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u>공동의장의 직무</u>) ①·②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모지영